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4호 2012년 12월 pp.343~381

한국세무학회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연구*

서희열** · 전규안*** · 안영화****

<요 약>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영세하며, 글로벌 경쟁력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외국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IT 강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제측면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은 해당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이해)가 높을수록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분석결과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과 함께 현행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인력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로 나타나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확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세지원방안을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조세지원방안과 (2)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3) 소프트웨어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4)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및 (5) 중소기업의 조세지원방안 등이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의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소프트웨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조세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에 대한 안내가 중요하다.

* 본 연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강남대학교 교수, suhhy810@hanmail.net, 031-280-3810, 제1저자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kajeon@ssu.ac.kr, 02-820-0581, 교신저자

**** 강남대학교 교수, yhan@kangnam.ac.kr, 031-280-3756, 공저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홈페이지와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거나 소프트웨어기업을 전담하여 상담하는 고문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제어〉 소프트웨어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인수합병

I. 서 론

소프트웨어(software)는 컴퓨터 및 시스템에 탑재되어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로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며, 기기·서비스·사람을 연결하는 산업 성장엔진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의미한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소프트웨어는 기능적 측면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SaaS(Software as a Service), 하청(Subcontract) 및 아웃소싱(Outsourcing),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기업들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영세하며, 글로벌 경쟁력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의 확보가 어려우며, 기업규모의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조세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의 주요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IT 강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세계측면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세법개정시 직접 이용가능한 수준의 실효성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는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국내외 조세지원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의 조세지원제도가 우리나라 제도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추가로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조사하고 현행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일부는 법인세법과 동 시행령, 부가가치세법과 동 시행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주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동 시행령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실태분석을 하며 제Ⅲ장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분석한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소프트웨어 관련 조세지원현황을 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한다. 제Ⅴ장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각종 조세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실태 분석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제Ⅵ장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실태분석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패키지소프트웨어 기업수는 2005년 2,080개에서 연평균 1.2%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2,204개가 되었다. 2008년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 기업수가 매년 감소하다가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모바일 컴퓨팅의 수요와 IT융합 확산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IT서비스 기업수는 2005년 2,678개에서 연평균 11.5%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4,622개가 되었다. IT서비스 기업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2008년부터 홈페이지 제작, 호스팅서비스 분야가 추가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¹⁾

우리나라의 2011년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13억 1,600만 달러로 추산되어 2010년 대비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패키지소프트웨어 수출 증가와 IT서비스 업체의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수출지역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011년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과 선진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프트웨어 수출액이 2010년 19.6%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2012년에도 글로벌 재정위기와 선진국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프트웨어 수출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²⁾

1)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1)의 pp.61~62 참조.

2)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011)의 p. 58 참조.

〈표 1〉 부문별 국내 소프트웨어기업 수 변동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CAGR
패키지 SW	기업수	2,380	2,080	2,035	1,980	1,762	2,071	2,204	1.2%
	증감	—	-12.6%	-2.2%	-2.7%	-11.0%	17.5%	6.4%	
IT 서비스	기업수	2,016	2,678	2,966	3,112	4,296	4,343	4,622	11.5%
	증감	—	32.8%	10.8%	4.9%	38.0%	1.1%	6.4%	
계	기업수	4,396	4,758	5,001	5,092	6,058	6,414	6,826	7.5%
	증감	—	8.2%	5.1%	1.8%	19.0%	5.9%	6.4%	

주1) 2008년부터 IT 서비스의 범위(홈페이지 제작, 호스팅서비스 추가)가 확대, 2009년 패키지소프트웨어 IT 서비스 기업수 비중은 잠정치임.

주2)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1)에서 인용

III.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국내외 조세지원제도 분석

1.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 분석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일부는 법인세법과 시행령,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주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는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은 모두 엔젤투자자와 같은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지원을 하기 위한 조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영세율에 관한 조항이다. 한편 제24조에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제105조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116조의2에서는 조세감면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외국의 조세지원제도 분석

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일본의 조세지원제도 분석

일본에서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는 「산업경쟁력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기반강화세제에 대하여(경제산업성(2011) 정보처리진흥과 발행)」에 잘 정리되어 있다. 동 세제의 목적은 고도의 정보보안(security)이 확보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 부문간, 기업간 정보 공유·활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동 세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문간·기업간의 벽을 허문 정보자산의 활용으로 ‘세계 최고의 IT 경영’의 실현이다. 한편 중소기업 정보기반강화세제의 도입으로 2010년도 세제 개정에서 대기업도 사용할 수 있었던 ‘정보기반 강화세제’는 폐지되었다.

「산업경쟁력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기반강화세제」의 특징으로서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거의 모든 중소기업자·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세액공제 및 특별상각이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부서간·기업간의 시스템 연계에 도움이 되는 연계소프트웨어나 효율적인 IT 투자를 촉진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넷째, 고도 정보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기구 기준(ISO/IEC15408)에 따라 평가·인증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반 강화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제조업 및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청색신고를 하는 중소기업자(자본금 1억엔 초과 대규모 법인의 자회사 등은 제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동 세제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대상설비 등에 적용된다. 한편 동 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는 기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연계 소프트웨어, 부정접속(access)방어 소프트웨어·부정접속보호 장치이다.

중소기업 정보기반 강화세제의 특례제도로 세액공제 제도와 특별상각 제도를 들 수 있다. 우선 세액공제 제도는 대상설비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7% 또는 특별상각 30% 중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당기에 지불해야 하는 법인세액으로부터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로서 “취득가액의 합계액×7%=세액공제액”에 따라 계산된다. 특별상각 제도는 대상설비 등에 대하여 사업용으로 쓰인 최초 사업연도에 그 자산 취득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보통상각 한도액에 가산하여 상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취득가액×30%=특별상각액”에 따라 계산된다. 한편, 중소기업 정보기반 강화세제의 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대상설비 등의 모든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70만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나.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중국의 조세지원제도 분석

중국 국가위원회는 2011년 2월 9일에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과세혜택을 주는 행정규칙(2011년 소프트웨어 및 IC회로산업발전 장려정책에 관한 국무원 정책공고 제4조)을 발표하

였다. 그 내용을 보면 자가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에 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IC)에는 영업세(business tax)를 면제하며, 적격 소프트웨어 회사와 집적회로(IC) 디자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험, 정보 시스템의 집약화, 건설팅, 운영, 유지, 집적회로(IC) 디자인에 대한 5%의 영업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³⁾

한편, 중국은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있다. 또한, 새로 설립된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3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하며, 80억 위안을 초과하고 폭 0.25마이크론 미만의 집적회로(IC)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한다. 적격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대규모 집적회로(IC)기업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의 조치로 소프트웨어기업의 근로자임금 전액 손금산입, 2년 가속상각, 채투자에 대한 세제환급,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소프트웨어산업에 많은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조세지원은 매우 파격적이다.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이러한 조세지원은 중국 내에서 산업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파격적인 조세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가 본받을 만하다.

다.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미국의 조세지원제도 분석

미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각 조세지원제도별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항들이 대기업에 비해 많다. 이러한 우대조항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 및 면제, 세액공제, 과세이연, 우대세율 등이다.

S법인, 파트너십 등의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의 순이익(net income)은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두 번 과세되는 반면, S법인(S corporation),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s),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파트너십과 같은 도관(pass through) 형태의 기업들의 순이익은 한 번만 과세된다. S Corporation 우대제도는 미국 내 법인이어야 하며, S법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인, 신탁, 파트너십 등이고 법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또한 미국 내 거주자만 주주가 될 수 있고,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의 수는 100명 이하이어야 한다.

3) 중국은 이 행정규칙 이전에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비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조치는 2010년에 만료되었다.

미국에서는 적절한 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연간 11만 2,000달러를 비용으로 공제해 준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제도로 기업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용 상각자산의 구입금액이 4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이 0이 된다. 이 제도는 자산구입금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조세지원 효과가 없어지므로 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라 할 수 있다.

창업초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배제 기준은 1998년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첫 과세연도를 포함한 매출 평균이 5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이후 3년 간 평균 매출이 75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⁴⁾

한편, 총 자산이 5천만달러 이하의 적절한 C법인에 의해 1993년 이후 발행된 소기업주식(QSBS ;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을 파트너십, LLC, S법인 등이 5년 이상 보유하다가 판매한 경우에는 자본이득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준다. 또한, 개인이 주식발행시점 출자지분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법인의 주식거래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자본손실이 아닌 통상손실로 공제해 준다. 통상손실로 공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만 달러(부부합산인 경우 10만달러)이다.

라.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영국의 조세지원제도 분석

영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용공제, 경감법인세율의 적용 및 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용공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지원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연구개발비용의 150%(대기업은 125%)를 공제하며, 과세소득이 없으면 오직 중소기업만 연구개발(R&D)비용의 일부에 대해 현금으로 연구개발 장려금(payable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과세소득이 150만 파운드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소기업(small business)은 개별 매입·매출건마다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기입할 필요가 없고, 차년도 연간매출액에 영역별 단일세율(flat rate)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첫 해에는 해당 단일세율에서 1%를 감면한다.⁵⁾

마.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캐나다의 조세지원제도 분석

캐나다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컴퓨터 부문 취

4) 김진수·송은주·마정화,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 비교”, 한국조세연구원, 2007, p.90.

5) 소기업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연간 매출액이 15만 파운드 미만이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연간 사업소득이 18.75만 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특시 즉시 상각을 인정하고 있다. 즉, 2009년 1월 27일부터 2011년 2월 1일까지 취득하는 컴퓨터 기기와 시스템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율을 100%로 하여 즉시 상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적용되던 제조업 기계설비에 대한 50% 정액 가속상각법을 2010~2011년까지 적용하도록 연장하였다. 한편 기계장치와 설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캐나다와 같이 컴퓨터 기기와 시스템소프트웨어에 대한 즉시 상각의 도입과 가속상각법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동안)이라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네덜란드의 조세지원제도 분석

네덜란드 정부는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인 innovation box regime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⁶⁾ 적용대상 납세자는 등록된 특허권 소유자나 등록된 특허권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기타 R&D 무형자산 관련 적격 무형자산의 수익적 소유자, 기타 R&D 무형자산의 납세자는 관련 적격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특례세액 계산구조는 적격 과세소득에 특례세율(5%)로 과세하고 있다. 적격 과세소득이란 적격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한편 네덜란드가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도입한 innovation box regime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nnovation box regime을 통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기업들에 대한 조세지원의 확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단, 본 연구의 분석은 조세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액계산방법이 정형화되어 분석이 용이한 법인세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6) innovation box regime이란 적격한 무형자산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써 2007년에 도입된 patent box regime을 확대한 것을 말한다. patent box regime이란 특허권과 R&D관련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법인세 조세지원 규모 분석

먼저 소프트웨어기업들이 분석대상 기간인 2007년 이후에 적용받은 법인세감면액을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실증분석을 위해 KIS-VALUE Database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업종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검색하면 132개의 기업을 수집할 수 있는데, 동(同)기업들은 다시 기업규모에 따라 29개의 대기업과 131개의 중소기업으로 구분된다. 분석대상 기업들의 손익계산서에 연도별 법인세비용을 합산해서 기업규모별 법인세부담액을 계산하면 <표 2>와 같다.⁷⁾

<표 2> 외부감사대상 소프트웨어기업의 기업규모별 및 연도별 법인세 부담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대기업	2,490	2,226	2,507	3,215	3,501
중소기업	689	888	1,036	884	961
합 계	3,179	3,114	3,543	4,100	4,462

* 2011년은 2010년의 법인세 부담액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업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을 곱해서 계산했다.

<표 2>의 법인세 부담액에 전병욱(2011)이 계산한 기업규모별 및 연도별 법인세 감면비율⁸⁾ 적용하면 <표 3>과 같이 외부감사대상 소프트웨어기업의 기업규모별 및 연도별 법인세 감면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 3> 외부감사대상 소프트웨어기업들의 기업규모별 및 연도별 법인세 감면액

(단위 :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대기업	240	219	284	348	397
중소기업	105	149	181	146	162
합 계	345	368	465	494	559

* 법인세 감면액=<표 2>의 법인세 부담액×{법인세 감면비율(이하 “r”)÷(1-r)}

7) 물론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은 실제 법인세부담액과는 차이가 있지만, 법인세부담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 법인별 법인세 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주석사항을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비용을 이용해서 법인세부담액을 개산하였다.

8) 전병욱(2011)이 국세통계연보 등을 이용해서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계산한 기업규모별 및 연도별 법인세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대기업	10.8%	11.1%	13.0%	12.4%	13.0%
중소기업	18.7%	21.3%	22.6%	20.8%	21.5%
합 계	12.7%	13.3%	15.1%	14.1%	14.8%

<표 3>에서 계산한 법인세 감면액은 외부감사대상 소프트웨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전체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에서 계산한 자산규모별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자료를 이용해서 전체 소프트웨어기업들의 기업규모별 및 연도별 법인세 감면액을 계산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전체 소프트웨어기업들의 기업규모별 및 연도별 법인세 감면액⁹⁾

(단위 :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대기업 ^{*1}	240	219	284	348	397
중소기업	145	188	243	211	236
합 계	385 ^{*2}	407	527	559	633

*1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들은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표 3>의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2 345억원(<표 3>) ÷ 89.6%(<주석 표 2>) (2010년과 2011년은 <주석 표 2>에서 2009년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9) <표 4>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국세통계연보의 연도별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자산규모별로 구분하면 <주석 표 1>과 같다.

<주석 표 1> 연도별 및 자산규모별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단위 : 억원)

자산규모	2007년	2008년	2009년
-50억원	4,757	5,340	4,769
50억원-100억원	3,037	3,460	3,564
100억원-	48,092	58,188	63,150
계	55,885	66,988	71,483

<주석 표 1>의 구분을 바탕으로 외부감사대상인 법인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으로 구분한 결과는 <주석 표 2>과 같다. 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08년까지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이 외부감사의 대상이었고, 2009년 이후에는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주석 표 1>의 자산규모는 직전사업연도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것이지만 직전사업연도의 자산규모에 따른 구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또한, 2007년과 2008년의 경우에는 70억원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화평균(harmonic mean)의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주석 표 2> 연도별 및 외부감사대상 해당 여부별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단위 :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비외부감사대상	5,795	10.4%	6,521	9.7%	8,333	11.7%
외부감사대상	50,090	89.6%	60,467	90.3%	63,150	88.3%
계	55,885	100.0%	66,988	100.0%	71,483	100.0%

<표 4>와 같이 소프트웨어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액은 연도별로 385억원 내지 633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동(同)감면액이 소프트웨어기업들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표 5>와 같이 매년 0.22% 내지 0.33% 수준으로 전체 법인에 대해서 계산한 비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의 결과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이것은 후술하는 소프트웨어기업들에 대한 조세지원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5> 소프트웨어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법인세 감면액 비율

(단위 :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프트웨어기업	매출액* ¹ (①)	146,952	187,510	227,302	215,027	194,155
	법인세감면액* ² (②)	385	407	527	559	633
	비율(②÷①)	0.26%	0.22%	0.23%	0.26%	0.33%
전체 법인	매출액* ³ (①)	2,496,759	2,520,783	5,824,644		
	법인세감면액* ⁴ (②)	51,519	59,961	62,568		
	비율(②÷①)	2.06%	2.38%	1.07%		

*1 “소프트웨어산업백서 2010”에 달러화로 표시된 연도별 국내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규모에 연도별 평균환율을 곱한 금액이다¹⁰⁾.

*2 <표 4>의 결과이다.

*3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의 자료이다.

*4 전병욱(2011)의 결과이다.

2.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하여 법인세감면의 형태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이 다양한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매출액 대비 법인세 감면액의 비율이 <주석 표 1>의 2011년의 0.33%에 비해 10% 증가하는 경우(이하 “경우①”), 25% 증가하는 경우(이하 “경우②”)

10) 연도별 국내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규모 및 평균환율은 <주석 표 3>과 같다.

<주석 표 3> 연도별 국내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규모 및 평균환율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내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규모	157억USD	170억USD	176억USD	186억USD	194억USD
평균환율(USD/KRW)	936.00	1103.00	1291.49	1156.06	1000.80

및 50% 증가하는 경우(이하 “경우③”)로 구분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경우①, 경우② 및 경우③은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매출액 대비 법인세감면액의 비율이 각각 0.36% ($0.33\% \times (1+10\%)$), 0.41% 및 0.49%가 되는 경우이고, 2011년의 경우에는 법인세감면액이 각각 696억원, 791억원 및 949억원이 되는 경우이다.

〈표 6〉 법인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한 경우의 수

구 분	경우①	경우②	경우③
2011년 대비 법인세 감면액의 증가비율	10%	25%	50%
매출액 대비 법인세 감면액 비율	0.36%	0.41%	0.49%
매출액 대비 법인세 감면액 비율의 증가분	0.03%*	0.08%	0.16%

* $0.36\% - 0.33\%$

경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각각의 경우와 같이 증가한 법인세감면액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의 판매가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조세감면을 통한 비용하락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산업조직론의 이론 및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예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에서 많은 기업들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 비용할증 가격설정(full-cost pricing or mark-up pricing)의 방식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즉, 비용할증 가격설정의 방식에서는 기업은 식(1)과 같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판매량 수준에서 평균비용(average cost, AC)을 구한 후에 이 평균 비용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마진율(m)을 더해서 판매가격(price, P)을 결정하는 것이다.

$$P = AC(1 + m) \quad (1)$$

식(1)에서 m이 단기적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P와 AC 간에도 단기적인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표 2>의 분석에 이용한 131개 외부감사대상 소프트웨어기업들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AC \div P)$ 의 비율을 계산하면 92.23%이므로¹¹⁾, <표 6>의 경우별로 법인세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표 7>과 같이 AC는 각각 0.04%, 0.09% 및 0.18%가 감소하게 되고 P도 역시 같은 비율만큼 감소하게 된다.

11) AC와 P에 각각 판매량(Q)를 곱하면 $(AC \times Q)$ 는 법인세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이고, $(P \times Q)$ 는 매출액이며, $(AC \div P) = (AC \times Q) \div (P \times Q) = \{(P \times Q) - NI\} \div (P \times Q) = 1 - \{NI \div (P \times Q)\}$ (NI : 당기순이익)이므로 $(AC \div P)$ 는 이들 기업들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합산해서 <주식 표 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표 7〉 법인세감면의 경우별 가격(P)과 평균비용(AC)의 감소비율

구 분	경우①	경우②	경우③
매출액 대비 법인세 감면액 비율의 증가분 ^{*1}	0.03%	0.08%	0.16%
가격 ^{*2} 대비 평균비용의 감소비율	0.04% ^{*3}	0.09%	0.18%
가격의 감소비율 ^{*4}	0.04%	0.09%	0.18%

*1 <표 6>의 결과

*2 여기서 “가격”은 평균비용과 같은 비율만큼 감소하기 전의 가격을 의미한다.

*3 $(92.23\% - 0.03\%) \div 92.23\%$

*4 위 행과 같은 값이다.

전영서(2006)의 PC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의 가격탄력성은 0.021로 나타났기 때문에 <표 8>과 같이 <표 7>의 가격하락에 대한 판매량과 매출액의 변동을 예상할 수 있다.¹²⁾

〈표 8〉 법인세감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한 판매량과 매출액의 변화

구 분	경우①	경우②	경우③
가격의 감소비율 ^{*1}	0.04%	0.09%	0.18%
판매량의 증가비율	0.0007% ^{*2}	0.0019%	0.0037%

*1 <표 7>의 결과

*2 $0.04\% \times 0.021$

<표 8>과 같이 법인세 감면을 통한 가격하락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판매량의 증가비율은 법인세 감면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에서 판매량의 증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전술한 전영서(2006)가 제시한 낮은 소프트웨어의 가격탄력성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전영서(2006)가 분석한

〈주석 표 4〉 연도별 외부감사대상 소프트웨어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평균비용

(단위 :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①)	86,472	97,829	102,662	122,607
당기순이익(②)	4,522	5,443	10,236	12,639
$(AC \div P)(1 - (② \div ①))$	94.77%	94.44%	90.03%	89.69%

- 12) 전영서(2006)에 의하면 가격탄력성은 Linux(0.0002), Windows(0.021), Unix(0.061), 기타 운영체제(0.378)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중 Windows(2004년의 경우에는 98.0%의 시장점유율)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체제들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Windows의 값을 그대로 PC 운영체제의 가격탄력성으로 채택하였다.

PC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외에 패키지 소프트웨어, IT서비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이 있고 이들 소프트웨어 제품의 가격탄력성은 PC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체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판매량의 증가비율은 <표 8>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의 경제적 효과 역시 본문에서 기술한 내용에 비해서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 감면을 통한 직접적인 소프트웨어 판매량의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높은 연관효과로 인해 국가경제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은행(2011)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산업의 2009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794로 제조업(0.589)의 1.3배에 이르고, 전체 산업(0.687)의 1.2배에 이르고 있다. 부가가치 유발계수(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는 해당 산업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의미한다.

위와 같이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1,172조8,030억원)에 <표 8>의 판매량 증가비율과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각각의 경우별로 <표 9>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69억원 내지 346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9> 법인세감면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의 시장규모 변동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구 분	경우①	경우②	경우③
GDP의 변동비율	0.000589%*1	0.001473%	0.002946%
부가가치 창출효과(단위 : 억원)(②)	69*2	173	346

*1 0.0007%(<표 8>의 판매량의 증가비율)×0.794(소프트웨어산업의 2009년 부가가치 유발계수)

*2 1,172조8,030억원(2010년의 국내총생산(GDP))×0.000589%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함께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표 10>과 같이 국민경제의 전체 산업에서 신규채용 및 고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즉, 한국은행(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의 2008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14.0과 9.6이다.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한 경우 전체 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자 및 고용자의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표 10>과 같이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각각의 대안별로 전체 산업에서 339명 내지 1,693명의 신규취업 및 고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0〉 소프트웨어산업의 법인세감면을 통해 창출되는 신규취업 및 고용

구 분	경우①	경우②	경우③
부가가치의 순창출효과(단위 : 십억원)(①)* ¹	14.3	35.9	71.7
신규취업 및 고용인원(단위 : 명)	339* ²	846	1,693

*1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순창출효과를 의미한다¹³⁾.

*2 $14.3 \times (14.0(2008년\ 취업유발계수) + 9.6(2008년\ 고용유발계수))$

<표 10>과 같이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충분한 취업과 고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동(同)조세지원은 전술한 소프트웨어 판매량의 증가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함께 국가경제 전체에 대해서 충분한 경제적 편익(economic benefits)을 가져온다. 특히,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되었고 정부의 다양한 고용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2010년 연간 순고용증가 인원이 42만4,000명에¹⁴⁾ 그칠 정도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뚜렷한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큰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긴급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V. 소프트웨어산업의 조세지원제도 관련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의 설계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파악 및 이용실태분석을 통해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조세지원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설문대행업체를 통해 e-mail로 설문지와 설문참여가 가능한 URL 주소를 발송하였으며, 추가로 설문지 파일을 송부하여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이메일로 회수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소프트웨어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소기업 9개, 중소기업 24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13) 예컨대, 경우①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는 부가가치가 74억원(21조5,027억원(2010년 소프트웨어기업들의 매출액, <표 5>에서 인용) $\times \{(1 - 0.04\%) \times (1 + 0.0007\%) - 1\}$) 감소하는 반면 산업 전체에서는 69억원 증가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순창출효과는 143억원(74억원+69억원)이다.

14) $45만5,000명(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수) - 1만9,000명(전년\ 대비\ 실업자\ 증가수) - 1만2,000명(전년\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수)$

2. 설문조사 결과분석

가. 응답자 특성분석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설문에 응답한 기업은 총 33개 기업이며, 이 가운데 소기업이 9개(27%), 중소기업이 24개(73%)로 나타나, 설문대상 기업의 2/3정도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총 33개 기업은 모두 비상장법인이었다.

〈표 11〉 설문 응답자의 분포

구 분	응답자수	표본구성 비율
소기업	9	27%
중소기업	24	73%
합 계	33	100%

나. 설문조사 대상의 기술통계량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설문조사대상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47억원, 당기순이익은 -0.8억원(이상치 제거 시 2억원), 2010년 연구·개발비 발생액 23억원, 최근 5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 발생액 7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발생액(2010)의 비율은 49.3%로서 전체기업 수준에서는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연구·개발비 지출액 7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된 23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표 12〉 설문조사대상의 기술통계량 : 전체기업

(단위 : 억 원)

구분(2010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25%	75%	최대값
매출액	33	47.15	43.58	5.00	15.00	70.00	210.00
당기순이익	33	-0.89	17.92	-100.00	0.61	3.00	7.00
연구·개발비 발생액	32	23.25	87.60	0.00	1.50	9.00	496.00
연구·개발비 발생액 (최근 5년간 연평균)	31	7.16	17.54	0.00	1.00	6.50	100.00

※ 당기순이익의 평균에 음(-)의 값이 나온 이유는 응답기업 가운데 한 기업이 -100억원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제거하는 경우 평균 2.20억원, 표준편차 2.25억원, 최소값 -3.00억원이다.

다. 설문문항 분석

(1)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분석

<표 13>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표 13>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에 관한 설문분석결과

문항 : 다음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입니다. 각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구· 인력개발 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 액공제	연구및인력 개발설비투 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 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 인력개발 준비금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① 전혀 모른다	11 36.36%	3 9.09	8 24.24%	20 60.61%	6 18.18%	14 43.75%	4 12.12%	12 36.36%	15 45.45%
② 조금 안다	9 27.27%	6 18.18	2 6.06%	5 15.15%	9 27.27%	5 15.63%	4 12.12%	10 30.30%	9 27.27%
③ 보통이다	8 24.24%	15 45.45	18 54.55%	6 18.18%	12 36.36%	12 37.50%	18 54.55%	7 21.21%	8 24.24%
④ 잘 안다	4 12.12%	6 18.18	5 15.15%	2 6.06%	6 18.18%	1 3.13%	7 21.21%	4 12.12%	1 3.03%
⑤ 매우 잘 안다	0 0.00%	3 9.0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합 계	33	33	33	33	33	32	33	33	33
평 균	2.12	3.00	2.60	1.69	2.54	2.00	2.84	2.09	1.84
표준편차	1.053	1.060	1.028	0.983	1.002	0.983	0.905	1.041	0.905
차 이 검 정	t-test	-1.97 (0.0576)	-3.40 (0.0019)	-0.93 (0.3593)	-0.90 (0.3749)	-2.48 (0.0187)	-0.79 (0.4331)	-0.70 (0.4887)	-2.33 (0.0265)
	Wilcoxon Two- sample test	-1.8368 (0.0662)	-3.0578 (0.0022)	-0.9818 (0.3262)	-1.0145 (0.3103)	-2.1909 (0.0285)	-0.7681 (0.4424)	-0.9344 (0.3501)	-2.2203 (0.0264)

주) t-test와 Wilcoxon Two-sample test는 설문결과에 대하여 소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것임. ()안 p값임.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각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평균은 최소 1.69(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에서 최대 3.00(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응답기업중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지도 차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

공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서 중소기업이 소기업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 분석

<표 14>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표 14>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관한 설문분석결과

문항 : 다음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입니다. 각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구· 인력개발 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 액공제	연구및인력 개발설비투 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 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 인력개발 준비금
① 전혀 활용안한다		15	4	8	24	12	26	5	17
		46.88%	12.50%	25.81%	75.00%	37.50%	83.87%	15.63%	53.13%
② 조금 활용한다		8	4	4	4	5	3	3	9
		25.00%	12.50%	12.90%	12.50%	15.63%	9.68%	9.38%	28.13%
③ 보통이다		7	15	14	4	10	2	15	4
		21.88%	46.88%	45.16%	12.50%	31.25%	6.45%	46.88%	12.50%
④ 많이 활용한다		2	5	5	0	5	0	8	2
		6.25%	15.63%	16.13%	0.00%	15.63%	0.00%	25.00%	6.25%
⑤ 매우 많이 활용한다		0	4	0	0	0	0	1	0
		0.00%	12.50%	0.00%	0.00%	0.00%	0.00%	3.13%	0.00%
합 계		32	32	31	32	32	31	32	32
평 균		1.87	3.03	2.51	1.37	2.25	1.22	2.90	1.71
표준편차		0.975	1.149	1.060	0.707	1.135	0.560	1.058	0.924
차 이	t-test	-0.41 (0.6826)	-4.00 (0.0004)	-0.43 (0.6697)	-1.65 (0.2547)	-1.08 (0.2883)	-0.58 (0.5636)	-0.09 (0.9250)	-1.67 (0.1088)
	Wilcoxon Two-sample test	-0.3030 (0.7619)	-3.3479 (0.0008)	-0.6477 (0.5172)	-1.0045 (0.3151)	-1.0037 (0.3155)	-0.3528 (0.7242)	-0.4646 (0.6422)	-0.9814 (0.3264)

주1) t-test와 Wilcoxon Two-sample test는 설문결과에 대하여 소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것임. ()안 p값임.

주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2년부터 시행되므로 활용도 조사에서 제외됨

<표 14>에서 보는 것처럼 각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도의 평균은 최소 1.22(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최대 3.03(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응답기업중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용도 차이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만 중소기업이 소기업보다 활용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간의 관계 분석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간에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표 15>에 보고하였다.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q6_6, q7_6)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이를 더 잘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¹⁵⁾ 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홈페이지와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거나 소프트웨어기업을 전담하여 상담하는 고문 세무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표 15> 조세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의 상관계수

	q7_1	q7_2	q7_3	q7_4	q7_5	q7_6	q7_7	q7_8
q6_1	0.55474***	0.12937	0.33619*	0.39622**	0.37166**	0.19536	0.41978**	0.47869***
q6_2	0.07337	0.69008***	-0.06507	-0.03374	-0.01400	-0.13032	0.03570	0.08822
q6_3	0.41602**	-0.07427	0.56360***	0.14206	0.36080**	-0.01746	0.45467***	0.41419**
q6_4	0.06254	-0.07695	-0.18473	0.43140**	0.00716	0.31938*	0.15853	0.19257
q6_5	0.35040**	0.35555**	0.36734**	0.27373	0.44231**	0.13386	0.49130***	0.44011**
q6_6	-0.14191	0.00000	-0.37059**	0.19117	-0.12837	0.04687	0.10047	-0.06655
q6_7	0.29453	0.10141	0.41095**	0.21982	0.35660**	-0.00680	0.63090***	0.37339**
q6_8	0.30220*	0.23956	0.25440	0.28525	0.27318	0.15193	0.36286**	0.47435***

※ 변수의 정의

- q6_1(인지도), q7_1(활용도) : 임시투자 세액공제
- q6_2(인지도), q7_2(활용도)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q6_3(인지도), q7_3(활용도) :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 q6_4(인지도), q7_4(활용도)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 q6_5(인지도), q7_5(활용도) :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 q6_6(인지도), q7_6(활용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q6_7(인지도), q7_7(활용도)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q6_8(인지도), q7_8(활용도)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4) 조세지원제도 운용의 효율성 분석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표 16>에 제시하였다. 전체기업 수준에서 ‘보통이다(58%)’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

15) 물론 반대로 이미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것일 수도 있으나, 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18%)’, ‘전혀 그렇지 않다(15%)’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은 2.60으로 기업들이 현행 조세지원제도 운용효율성을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이 소기업에 비해 현행 조세지원제도 운용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조세지원제도 운용효율성 설문분석결과

문항 :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소 속		전 체
	소기업	중소기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5 (55.56%)	0 (0.00%)	5 (15.15%)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1 (11.11%)	5 (20.83%)	6 (18.18%)
③ 보통이다	3 (33.33%)	16 (66.67%)	19 (57.58%)
④ 대체로 그렇다	0 (0.00%)	3 (12.50%)	3 (9.09%)
⑤ 매우 그렇다	0 (0.00%)	0 (0.00%)	0 (0.00%)
합 계	9(100.00%)	24(100.00%)	33(100.00%)
평 균	1.77	2.91	2.60
표준편차	0.971	0.583	0.863
차이 검정	t-test	t값 (Pr> t)	-3.30 (0.0078)
	Wilcoxon Two-sample test	Z값 (Two-sides Pr> z)	-2.9835 (0.0028)

주) t-test와 Wilcoxon Two-sample test는 설문결과에 대하여 소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것임. ()안 p값임.

앞의 <표 14>의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소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표 16>에서 조세지원제도 운용효율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소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차이가 있는 것(중소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응답)으로 나온다. 이는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소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효율성에 대해서는 소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더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더 많이 인지하고 있고, 조세지원제도의 일부만 활용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소프트웨어산업의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현행 조세지원제도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에 대한 설문결과를 <표 17>에 제시하였다. 전체기업 수준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조세지원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

한 세액공제(28%) 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9%)’,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분석결과

문항 : (현행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 3개를 선택해주세요.

구 분		소 속		전 체
		소기업	중소기업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0(0.00%)	1(1.45%)	1(1.05%)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7(26.92%)	20(28.99%)	27(28.42%)
③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26.92%)	17(24.64%)	24(25.26%)
④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1(3.85%)	4(5.80%)	5(5.26%)
⑤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2(7.69%)	12(17.39%)	14(14.74%)
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3.85%)	2(2.90%)	3(3.16%)
⑦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23.08%)	12(17.39%)	18(18.95%)
⑧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7.69%)	1(1.45%)	3(3.16%)
합 계		26(100.00%)	69(100.00%)	95(100.00%)
평 균		4.34	3.94	4.05
표준편차		2.226	1.916	2.001
차이검정	t－test	t값 (Pr> t)	0.88	(0.3832)
	Wilcoxon Two－sample test	Z값 (Two－sides Pr> z)	0.7362	(0.4616)

주) t-test와 Wilcoxon Two-sample test는 설문결과에 대하여 소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것임. ()안 p값임.

VI. 소프트웨어산업 세제지원 활성화 방안

1.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국내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수·합병에 대한 조세지원이 미흡하다. 정부에서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세제를 개정하여 2010. 7. 1. 이후의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

어, 과거에 비해 인수·합병 관련 세제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분할과 관련된 5년 이상 사업목적성 요건은 다른 업종들에 비해 기술발전이 빠르고 특정 기술분야의 최적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분할이나 분사가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기업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합병시 피합병법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합병 즉시 과세되는 반면에 합병으로 인한 효익은 수년에 걸쳐 발생하므로 합병기업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즉시 과세되고, 이로 인한 효익은 수년에 걸쳐 발생하므로 일정기간동안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엔젤투자자는 소프트웨어기업과 같은 벤처기업이 창업단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의 벤처붐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영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는 엔젤투자자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적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에 대한 조세지원이 미흡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수출드라이브정책 이후에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여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출 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들 규정이 우리나라의 WTO에 가입에 따라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에 대한 조세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셋째, 소프트웨어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조세지원이 부족하다. 소프트웨어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조세지원제도가 없다. 예를 들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 높은 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많은 비용이 여기서 제외되고 있다.

넷째,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이 미흡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은 공개 소프트웨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즉, 공개 소프트웨어는 무료이면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면서 배포할 수 있는 반면 기술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공개 소프트웨어로 인한 경제적 과급효과는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통해 공개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과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기술유출방지설비에 “시스템 보안제품”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안과 관련된 설비의 취득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자본화할 수 없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리적 방지시설과 유사한 성격으로 구분되어 비교적 낮은 공제율(투자금액의 3%)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스템보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세유인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다섯째, 소프트웨어기업 중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통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웨어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매출액 기준이 엄격하고,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1년말 세법개정에 의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는데, 소프트웨어기업의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위주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조세측면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한 조세제도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함께 앞에서 분석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방안들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다섯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소프트웨어산업 조세지원방안의 개요

(1)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2)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3) 소프트웨어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4)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5) 중소기업의 조세지원방안
① 과세이연요건 완화 ② 주식의 감액사유 완화 ③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확대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추가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① 소프트웨어기업의 인력양성 투자금액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②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	① 공개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신서비스 개발비용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② 시스템 보안 투자금액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①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범위 확대 ② 소프트웨어기업의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구체적으로는 (1)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조세지원방안과 (2)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3) 소프트웨어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4)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및 (5) 중소기업의 조세지원방안 등이다.

가.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일반적으로 합병과 분할의 경제적 효과가 크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담당자와 면담결과 이에 대한 필요성이 크므로 합병과 분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합병 및 분할 등에 적용되는 과세이연요건의 완화

정부는 민간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법인세제를 2010.7.1. 이후의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먼저,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는 “피합병법인의 축적된 미실현이익이 합병을 계기로 관련 당사자에게 실현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형식적인 조직개편으로 보고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의 당사자들에게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우는 대신 각종 조세에 대한 과세이연을 규정하고 있다.

합병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 ㉠ 사업목적성 요건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 지분의 연속성 요건
- ㉢ 사업의 계속성 요건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는 인적분할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즉, 인적분할의 경우에도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인적분할을 형식적인 조직개편으로 보고 분할법인의 미실현이익도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분할의 당사자들에게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우는 대신 각종 조세에 대한 과세이연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 ㉠ 사업목적성 요건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분할로서 세부적인 조건들을¹⁶⁾ 모두 만족할 것
- ㉡ 지분의 연속성 요건
- ㉢ 사업의 계속성 요건

16)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이상에서 분석한 합병의 과세체계에서 과세이연의 요건은 소프트웨어기업이 합병법인이거나 피합법법인인 경우에도 특별한 제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적분할의 요건에서 “5년 이상”의 사업목적성 요건은 소프트웨어기업들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 기술발전이 빠르고 특정 기술분야의 최적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분할이나 분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엄격한 요건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인적분할의 사업목적성 요건의 “5년 이상”의 기간을 합병의 경우에 적용되는 “1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프트웨어기업 발행주식에 대한 감액손실 계상 허용

법인세법은 결산조정을 통해 제한적인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해당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자산 중에서 주식은 발행법인이 주권상장법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비상장법인인 경우에 발행법인의 부도를 사유로 감액손실의 계상을 허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기업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경영실적이 약화되어 부도가 발생할 때 투자주식에 대하여 감액손실의 계상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현행 감액손실 사유 중 “발행법인의 부도”가 적용되는 특정주식에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보유주식 중 창업자(신기술사업자)의 발행주식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과 함께 소프트웨어기업의 발행주식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¹⁷⁾

엔젤투자자에 대한 국내의 조세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서 10% 소득공제를 해주거나(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창업자 등예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그러나 엔젤이 벤처기업이 아닌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¹⁸⁾

일본의 경우는 출자단계에서는 특정중소기업(창업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에 대하여 1,000만엔을 한도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정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그 투자액을 해당연도의 주식양도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자 후 단계에서는 특정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하에서 3년 이내의 이월공제가 허용된다.¹⁹⁾ 영국의 경우에는 엔젤투자자가 적격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

17) 엔젤투자자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게 자금지원과 경영지도 등을 해주는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 투자해 주므로 ‘천사(angel)’라고 불리운다.

18) 김진수(2011) p.12 참조.

19) 일본의 엔젤세제에 대해서는 국중호(2009)를 참조함.

제도에 의해 3년 이상 관련 주식을 보유하면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주식을 보유 후 주식을 처분하면 자본이득세를 면제받는다.²⁰⁾ 한편 엔젤이 펀드에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는 VCT(Venture Capital Trusts) 제도에 의해 VCT의 신규발행주식에 한해 5년 이상 보유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본이득세는 최대 20만 파운드까지 면제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SBIC(중소기업투자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법인 외 투자자 또는 적격 중소기업 발행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해당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면 실현된 주식 매각차익의 50%를 비과세한다. 또한 매각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개인투자자의 통상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주정부차원에서 엔젤투자자에 대하여 많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성장단계 또는 성숙단계에 투자하는 반면에 엔젤투자자는 창업단계에 투자하게 되므로 엔젤투자의 위험부담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엔젤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엔젤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도록 외국 수준의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비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현재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영국 수준인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20%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소득공제한도를 종합소득금액의 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엔젤투자자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실에 대하여 3년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일본,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엔젤투자자의 주식매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다른 주식양도차익과 통산하고 통산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엔젤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손실에 대하여 일본 수준인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가 보유 주식이나 다른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을 EIS 적격기업의 발행주식에 재투자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납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50%)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창업자에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엔젤투자자의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물론 이때에는 창업자와 특수관계가 없이 순수하게 엔젤투자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0) 영국과 미국의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김진수(2011)를 참조함.

나.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국내의 협소한 소프트웨어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과 수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 해외에 진출한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고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조세지원방안의 수립이 중요하다.

(1) 해외진출과 수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개관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수출드라이브정책 이후에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여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출 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었다.²¹⁾ 그러나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에 따라 이들 규정은 1998년 4월 10일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수출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수출단계에서의 조세지원과 수출이전단계에서의 조세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수출단계에서의 조세지원은 WTO 규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이전단계에서의 조세지원으로 사실상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해외진출과 수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첫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관련)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기업이 정채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더욱 큰 성장 기회를 얻기 위해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등의 형태로 대기업과 해외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인 기금사용 목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동법시행령 [별표 1]의 “4.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서는 기금의 사용목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과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으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의 목적에 세법개정안의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과 함께 “협력중소기업과의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추가하고, 이후의 동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관련한 기금사용 목적을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 공동연구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나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준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중 해외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

2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절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내용 :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동법 제17조),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동법 제19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20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동법 제23조),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동법 제24조), 수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동법 제 18조),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동법 제21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구개발비에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하여야 한다.

다. 소프트웨어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소프트웨어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유지해서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5장의 설문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인지 및 활용하고 있으며,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조세지원제도이다. 한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향후 소프트웨어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이다.

(1) 소프트웨어기업의 인력양성 투자금액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분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30%	20%
원천기술연구개발비		30%	20%
일반연구·인력개발비 MAX(①, ②)	① 소급 4년간 연평균 발생액 초과분	50%	40%
	② 당해 사업연도 발생액	25%	3%~6%

<표 18>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중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것인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의 범위와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7]은 전담부서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등의 인건비와 원재료 등의 구입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범위와 관련해서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별표 8]은 전담부서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등의 인건비와 원재료 등의 구입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는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예컨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 “7. 콘텐츠-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와 [별표 8]의 “9. 지식정보보안”의 세부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동(同)인건비에 대해서 비교적 유리한 조세지원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항목이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조세지원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그 밖의 모든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개발

관련 인건비에도 동일한 조세지원이 적용되도록 별표의 항목들을 현재의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변경(예컨대, [별표 7]이나 [별표 8]의 분야별 대상기술에 “그 밖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2011년말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표 19>와 같이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유지조건의 기본공제와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로 구분되고, 일반근로자수, 청년근로자수 및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수에 비례하는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표 19>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기본공제* ¹ (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 ² (고용증가비례)	2%	2%	3%
합계* ³	5%	6%	7%

*1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3~4%의 공제를 적용

*2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한도 :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 청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마이스터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 1인당 2,000만원

<표 19>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방식은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되고 다양한 고용촉진정책을 통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뚜렷한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긴급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고용대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고용수준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더라도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측면을 감안하면 최소한 대다수의 소프트웨어기업이 포함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표 20>과 같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외에 “기초공제”의 개념으로 2011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해서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2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한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임시투자세액공제		—	—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고용유지조건)	3%	4%	4%
	추가공제(고용증가비례)	2%	2%	2%
합 계		5%	6%	7%

라.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

(1) 공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신서비스 개발비용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ftware)는 소스코드(source code)가 공개된 상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²²⁾ 일반적인 비공개 소프트웨어(close source software)와 다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하고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개량해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²³⁾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은 공개 소프트웨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즉, 공개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요금이 무료이면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면서 배포할 수 있는 반면 기술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개 소프트웨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또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신서비스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 비해 합리적인 이용방식으로 인해 이용요금을 크게 낮추거나²⁴⁾ 정보의 사회적 공유에 크게 기여하기²⁵⁾ 때문에 역시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22) 이러한 의미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23)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로는 Bind(DNS시스템), Sendmail(전자우편), Apache(웹서버), X Window System, Perl(개발언어), Mozilla(웹브라우저), Linux(운영체제) 등이 있다.

24) 예컨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공급업체가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수의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사용량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을 구매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대폭 줄이고 인프라의 구축과 관리로 인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도 이와 유사하게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만 빌려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로 인해 제2의 디지털 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25) 예컨대, SNS는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정보의 공유 및 검색에 이용되는 것과 함께 전자우편이나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로 사용자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신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술한 소프트웨어를 통한 일반적인 외부경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동(同)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개선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대상에 공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신서비스의 개발비용을 포함시키면서 동(同)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스템 보안투자금액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소프트웨어는 수요의 낮은 가격탄력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수요의 낮은 가격탄력성은 소프트웨어를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의 특성을 가진 공공재(public goods)로 인식하는 경향과 함께 공짜점심(free lunch)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만연해진 불법복제로 인해 법인세 감면을 통해 낮아진 판매가격이 소프트웨어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0호는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 기술유출방지설비에는 “시스템 보안제품”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안과 관련된 설비의 취득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자본화할 수 없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리적 방지시설과 유사한 성격으로 구분되어 비교적 낮은 세액공제율(투자금액의 3%)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스템보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세유인(tax incentive)이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별표 8]의 “시스템 보안제품”을 “시스템 보안제품의 취득과 시스템 보안관련 지출액”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나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이 1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별도의 세액공제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의 조세지원방안

제5장의 설문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가장 많은 기업들이 인지 및 활용하고 있으며,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조세지원제도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은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1)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범위의 확대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다양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되 각각의 기준이 1천명

이상 또는 1천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자본과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나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이들 조건 중에서 나머지 조건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쉽게 만족할 수 있지만 300억원 이하의 매출액 기준은 동(同)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따라서 유사한 성격의 업종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킬러 아이템(killer item)을 개발한 소프트웨어기업이 증가한 매출액으로 인해 조세감면의 적용이 크게 제한되고 그 결과 세후이익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계효과(borderline effect)를 방지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기업들이 포함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²⁶⁾

또한,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와 관련하여 특정 기술분야의 최적화를 위해 비교적 활발하게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적용을 허용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business model)로 창업한 신규 소프트웨어기업이 사업초기에 안정적인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프트웨어기업의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기업의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동(同)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12.31.까지 ① 협력중소기업

26)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을 정하고 있다.

해당업종	분류부호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제조업	C	300명 미만	80억원 이하	
광업	B	300명 미만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300명 미만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				

에²⁷⁾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제1호) 또는 ②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은 동(同)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금사용 목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현행 세법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의 목적에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추가하고, 동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동(同)기금의 사용용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파견한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세법개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기업들에게도 장래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파견인력의 인건비로 한정함으로써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기업이 정채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더욱 큰 성장기회를 얻기 위해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등의 형태로 대기업과 해외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인 기금사용 목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만, 별표의 “4.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서는 동(同)기금의 사용목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과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으로 한정해서 규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의 목적에 세법개정안의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과 함께 “협력중소기업과의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추가하고, 이후의 동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관련한 기금사용 목적을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여야 한다.

VII. 결 론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은 대기업 계열의 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영세한 중소기업이며, 글로벌 경쟁력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조세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조세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기업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27) “협력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많다.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별상각 제도와 준비금 제도 및 압축기장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새로 설립된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3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기업의 근로자임금 전액 손금산입, 2년 가속상각, 재투자에 대한 세제환급,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의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외국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새로 설립된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해서 일정 기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중국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기업들에게 제공된 조세지원 규모를 분석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85억원 내지 633억원의 규모로 매출액의 0.22% 내지 0.33%의 규모인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업종의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 2011년에 비해 10%, 25% 또는 50%가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분석하면 69억원 내지 346억원의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함께 전체 산업에서 339명 내지 1,693명의 신규취업 및 고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국가경제 전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다.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은 해당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이를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분석결과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홈페이지와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거나 소프트웨어기업을 전담하여 상담하는 고문 세무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더욱 알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인력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로 나타나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확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을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소프트웨어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이다. 소프트웨어기업들은 다른 업종들에 비해 기술발전이 빠르고 특정 기술분야의 최적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기업의

분할이나 분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분할의 과세이연요건 중 “5년 이상”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경제적 실질이 물적분할과 거의 동일한 현물출자의 과세이연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부도가 발생할 때 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의 계상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엔젤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엔젤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이다.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된 기금의 사용목적을 세법개정안의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과 함께 “협력중소기업과의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추가하여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 공동연구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나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준(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 30%))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셋째, 소프트웨어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조세지원방안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모든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개발 관련 인건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고용대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고용수준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더라도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측면을 감안하면 최소한 대다수의 소프트웨어기업이 포함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건의 기본공제와 고용증가비례조건의 추가공제 외에 “기초공제”의 개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새로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방안이다. 공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신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일반적인 외부경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동(同)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 기술유출방지설비에는 시스템 보안제품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안과 관련된 설비의 취득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자본화할 수 없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낮은 세액공제율(투자금액의 3%)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스템보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세유인이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스템 보안제품”을 “시스템 보안제품의 취득과 시스템 보안관련 지출액”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나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이 10%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방안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유사한 성격의 업종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해당 기업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을 30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기술분야의 최적화를 위한 활발한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3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허용하고, 신규 소프트웨어기업이 사업초기에 안정적인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의 적용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기업이 정제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더욱 큰 성장기회를 얻기 위해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등의 형태로 대기업과 해외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목적에 “협력중소기업과의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추가하고, 이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금사용 목적을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세지원제도의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많은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조세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에 대한 안내가 중요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거나 소프트웨어기업을 전담하여 상담하는 고문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문에 응답한 기업은 총 33개 기업으로서 모두 비상장법인이다. 이와 같이 표본이 제한된 것은 설문조사의 어려움 때문이며, 따라서 본 설문조사결과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세지원방안이 어떤 원리나 원인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며, 조세지원방안이 부담하는 비용과 예상되는 효익에 대한 분석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세지원방안이 다양한 방면으로 소프트웨어산업에 기여하고 조세지원방안 시행시 예상되는 비용과 효익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06-2011. 「국세통계연보」.
- 국중호.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 김진수·송은주·마정화. 2007.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 비교, 한국조세연구원.
- 김진수. 2011. 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8월호) : 6-26.
- 전병욱. 2011. “중소기업의 법인세 조세감면의 적극성의 분석-대기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2(4) : 489-516.
- 전영서. 2006. 「공개SW 활성화정책 파급효과 실증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통계청. 2011. 「보도자료 : 201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2011.1.12.)」.
- 한국은행. 2011. 「보도자료 : 2009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2011.4.29.)」.
-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소프트웨어산업백서」.
-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 經濟産業省商務情報政策局情報處理振興課(2011) 「産業競争力のための中小企業情報基盤強化税制について」【平成23年度税制改正】.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ax Incentives Rules for the Software Industry

Suh, Hi Youl* · Jeon, Kyu An** · An, Young Hwa***

— <Abstract> —

Most of software firms in Korea are small and medium-sized and are not competitive in global market. Foreign countries give tax incentives to software firms to incubate software industry. If there will be not tax incentives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software firms in Korea will not survive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ax incentive rules for software industry.

We investigate about tax rules for software industry in Korea. In Korea, tax rules for software industry are in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including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Corporation Tax Act(including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Value-Added Tax Act(including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The most important rules are in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and we mostly propose the improvement of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We introduce the tax incentive rules of United States, Japan, England, Canada, Holland, and China. And we carry out a survey targeting software firms on tax incentive rules of software industry. By the survey on software firms, the more they know tax incentives rules for software industry, the more they use them. This implies that not only the improvement of tax system but also public relations on it is important. And result of survey proposes that tax incentive from expenses for research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most important.

Based on survey results and tax incentive rules of foreign countries, we suggest five tax incentives for software industry ; (1) tax incentive for merger and acquisition of software firms, (2) tax incentive for export and overseas expansion of software firms, (3) tax incentive for human training of software firms, (4) tax incentive for new services of software firms, and (5) tax incentive for small and medium-sized software firms.

The survey results imply that because software firms don't know tax incentive rules or the conditions for tax incentive rules are very complicated they don't use them. So we suggest that

* Professor, Department of Tax Science, Kangnam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 Professor, Division of Computer Media Engineering, Kangnam University

the public relations on tax incentive rules for software industry and simplification of tax incentive rules are necessary. The examples of public relations are promotion by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nipa) and the introduction of tax advisers system for software firms.

〈Key words〉 Software Industry, Deduction of Tax Amount from Expenses for Research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erger and Acquisition